

2.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-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조 【예금거래 특례】

저축예금 가입자 중 가계수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청구서, 현금카드 또는 가계수표 등에 의하여 인출할 수 있다.

제3조 【이자】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예금의 이자는 상품별 해당 기준일에 계산하여 기준일 다음날(이하 ‘지급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우체국이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에는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)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우체국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한다.
-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,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【거래중지계좌】

우체국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 계좌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 예금주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신청할 때에는 우체국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잔고가 1만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
2. 잔고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
3. 잔고가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

제5조 【자동이체】

- ① 급여, 연금배당금 등 정기적 수입금 및 제세공과금, 공공요금 등 정기적 지급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체국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서 상의 제반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각종 지급금의 자동이체는 이체지정일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인출하여 자동 납입되므로 이체지정일의 지급가능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자동이체 지정일에 지급 가능액이 부족하여 우체국이 자동이체 처리를 못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체국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6조 【거래제한】

통장이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, 해당 통장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